#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15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박수현・양문석・박용갑

서삼석 · 임오경 · 이개호

이정문・황 희・조계원

정준호 • 조인철 • 임호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공개 의무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

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예외 등에"를 "예외,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로 한다.

-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민관협의체 구성) ①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 터 공개 및 저작물등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 저작권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1조제2항·제3항"을 각각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
무) ① ~ ③ (생 략)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
	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
	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⑤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
	물등(이하 "저작물등"이라 한
	다)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
	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
	<u>런하여야 한다.</u>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	<u>⑥</u>
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	
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u>예외 등에</u> 관하여	<u>예외, 제4항에 따른</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공개 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

정한다.

<신 설>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 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 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 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u>제31조제2항 · 제3항</u>, 제32조 2. <u>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u>-

	<u>른 확인 절차 등에</u>		
제	31조의2(민관협의체 구성) ①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		
	습용데이터 공개 및 저작물등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		
	능사업자, 저작권자 등과 협의		
	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u>.</u>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		
	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0조(사실조사 등) ①		
	1.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	
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	
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